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576
----------	-------

발의연월일 : 2025. 7. 18.

발 의 자 : 양부남·김영환·민병덕
민형배·박균택·박수현
박정현·안도걸·위성곤
이강일·정준호·정진욱
조계원·조인철·채현일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119구급대 또는 구급상황센터로부터 응급환자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2021년 12월 개정되어 2022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이 조항이 시행된 이후에도 응급환자 수용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119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장시간 대기하거나, 이송 자체가 지연되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실제로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해서 현장을 출발하기까지 걸리는 체류시간이 2023년에는 평균 10분에서 2025년에는 평균 13분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구급차 안에서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다수 보고되고 있음.

이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도 불구하고, 119구급대 또는 구급상황센터가 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응급의료기관은 환자를 우선 수용하여 응급처치를 하게 함으로써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이송”이란 119구급대가 응급환자에 대한 평가·처치, 이송병원 선정, 환자 인계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119구급차로 환자를 의료기관까지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의2제2항제2호 중 “안내”를 “선정 및 안내”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이송병원 선정은 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또는 제10조의2에 따른 구급상황센터에서 정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수용하고 응급처치를 시행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전원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관할 구급상황센터는 지역을 벗어나 이송병원 선정이 필요한 경우는 중앙 또는 타 시·도 구급상황센터에 이송병원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중앙 또는 타 시·도 구급상황센터는 신속히

이송병원을 파악하고 요청한 구급상황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u><신설></u> 9. ~ 12. (생략)	제2조(정의) ----- -----. 1. ~ 8. (현행과 같음) 9. “이송”이란 119구급대가 응급환자에 대한 평가·처치, 이송병원 선정, 환자 인계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119구급차로 환자를 의료기관까지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10. ~ 13. (현행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생략) ② 구급상황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략) 2.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u>안내</u> 3. ~ 7. (생략) ③ ~ ⑤ (생략)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 ----- <u>선정 및 안내</u> 3. ~ 7.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구조·구급활동) ①·② (생략)	제13조(구조·구급활동)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이송병원 선정은 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또는 제10조의2에 따른 구급상황센터에서 정한다.</u>
<u><신 설></u>	<u>④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수용하고 응급처치를 시행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전원 조치를 할 수 있다.</u>
<u><신 설></u>	<u>⑤ 관할 구급상황센터는 지역을 벗어나 이송병원 선정이 필요한 경우는 중앙 또는 타 시·도 구급상황센터에 이송병원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중앙 또는 타 시·도 구급상황센터는 신속히 이송병원을 파악하고 요청한 구급상황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u>
<u>③ (생 략)</u>	<u>⑥ (현행 제3항과 같음)</u>